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제194회 임시회>

2011. 2. 11.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2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3. 개정 이유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방문고지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 나. 별표1 및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으로 삭제

5.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방문고지 인력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방문고지 인력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조례에 방문고지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2011년 당초 예산에 방문고지 실비보상금액 11,200천원이 확보되어 있음. (40,000원×280명)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방문고지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및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6호까지의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1조의2 (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방문고지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개정 2009.4.1>)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2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장)
3. 제정이유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관 예정인 왕선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센터의 명칭은 왕선문화센터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에 둔다 (안 제2조)
- 나. 왕선문화센터는 달성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가능 (안 제4조)
- 다. 왕선문화센터의 업무내용 (안 제5조)
 - 1)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 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 3)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에 규정(안 제11조)
- 마.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바. 군수는 센터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음 (안 제22조)
- 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경비 지원 가능 (안 제23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다사읍에 개관예정인 왕선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것이 기대되는 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동일수준으로 하였으나, 다사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원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 제명에 있어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사항을 미반영 시킨 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점 역할 수행이라는 원 취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왕선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왕선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왕선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문화강좌실, 공연장, 회의실(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

리·운영한다.

-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4.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실(전시실) 등과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8조(시설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국가, 시 또는 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행사 전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경우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관람권 매표 금액에서 우선 징수하고 사후 정산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15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군수는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

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에게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센터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

거하여야 한다.

제18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임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의해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시설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장 문화강좌

제21조(문화강좌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23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제29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수 영 장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헬 스 장	이용 요금	50,000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曜일 : 06:00 ~ 18:00
- 일, 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일 : 06:00 ~ 22:00
 - 토曜일 : 06:00 ~ 18:00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장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1회(2시간)	10,000	
부 속 설 비	피아노	1회	30,000	
	Beam Project	1회	2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파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파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2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시설사업소장)
3. 개정이유

○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등 4개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추가하고 세부시설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3조에 명곡인라인스케이트장, 화원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별표 1(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을 신설함
- 나. 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3”을 “별표 4”로,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함
- 다. 제14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함
- 라. 제20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관내 새로 설치된 4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 세부시설을 명시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안에 새로 설치된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명곡인라인스케이트장, 화원게이트볼장 등 4개의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를 추가하고 세부시설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달성군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함.
- 다만, 별표1의 체육시설의 위치 표기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고 기존 주소로 표기되어 향후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가 되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별표2], 이용료 [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 [별표4]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②군수는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논공 축구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입장권) ②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관련)

명 칭	위 치
군민운동장 - 축구장, 경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달성군 논공읍 북리 1번지
군민체육관	달성군 협풍면 성하리 235의 4번지
논공축구장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의 10번지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명곡인라인스케이트장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4번지
화원게이트볼장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9의 1번지
다사체육공원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5번지
가창체육공원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342번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1조 관련)

1. 군민체육관, 논공·다사·가창축구장, 군민운동장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평일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군민체육관	실내	주간(1일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축구장 (논공·다사· 가창)	인조잔디	주간(1일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야간	-	-	-	-

- ① 사용기준 초과 시 1시간마다 전용사용료(주간)의 20%를 가산한다.
- ② 조기 사용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 ③ 축구장의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군의 거주자가 이용할 시는 전용사용료(주간)의 50%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주 2회 사용을 원칙(군민운동장은 제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단체가 축구장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주간)에 의한다.
- ⑤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전용사용료(주간)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테니스장 [화원·다사]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일일 회원	3,000	1인 1회 기준(2시간)
월회원	30,000	1인 1개월 기준
코트예약	주간(평일)	6,000
	주간(주말)	8,000
	야간(평일)	12,000
	야간(주말)	14,000
지도강습(레슨)	120,000	1인 20분/일 1개월 기준(월~금)
단체	주간	300,000 15명 1개월 기준(공휴일 제외, 1일 3시간) ※인원 초과시 1명당 20,000원
	야간	120,000 주1회 1면 1개월(1일 3시간)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 행사는 우선 사용한다.

3. 풋살경기장(논공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시간	평 일	공휴일
주간	1시간	35,000	45,000
야간	"	45,000	55,000

【별 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11조 관련)

시설별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군 민 체육관	개인	1일 1회 (2시간당)	500원	1.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50% 가산 2.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단체	1인 1회 (2시간당)	350원	3. 어린이는 6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함. 다만, 단체에 참여 하는 4세이하의 어린이는 이용가능 (어린이 요금 적용) 4. 청소년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함 5.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함 6. 어른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하며(고등학생과 군인 제외), 노인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함 7.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하며 군민체육관에 한함)·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는 50% 할인(다만, 중복 할인 불가)

* 할인대상자는 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 함.

【별 표 4】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시설	확성기 (1조)1일	5,000	
	이동식 앰프	20,000	

【별 표 5】

체육시설 입장료(제20조 관련)

기 준	요 금	비 고
어른 1인 1회	1,000원	1. 이런이는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 소년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을 말함
어린이, 청소년, 군인	500원	2. 군인은 정복 착용자에 한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군민운동장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번지에 둔다.	1. (삭제)
2. 군민체육관은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에 둔다.	2. (삭제)
3. 논공축구장은 달성군 논공읍 남리 717-10번지에 둔다.	3. (삭제)
4. 화원테니스장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4번지에 둔다.	4. (삭제)
5. 다사테니스장은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에 둔다.	5. (삭제)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별표 1】, 이용료 【별표 2】, 부대시설사용료 【별표 3】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④ (생략)	제11조(사용료) ①----- ----- 【별표 2】 , ----- 【별표 3】 , ----- 【별표 4】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군수는 【별표 1】 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논공축구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학교에서 운영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2】 의 ----- ----- ----- ----- ----- -----.
제20조(입장권) ① (생략) ②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4】 와 같다.	제20조(입장권)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5】 -----.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